

제18472호 2015. 3. 19.(목)

## 【부 령】

○ 국토교통부령제189호(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)..... 6

## 【고 시】

○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5-2호(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)....	15
○ 법무부고시제2015-90호(귀화허가).....	15
○ 법무부고시제2015-91호(귀화허가).....	19
○ 법무부고시제2015-92호(국적판정).....	22
○ 법무부고시제2015-94호(공익신탁의 공시) .....	23
○ 법무부고시제2015-95호(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) .....	25
○ 국방부고시제2015-90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.....	27
○ 국방부고시제2015-91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.....	28
○ 국방부고시제2015-92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.....	28
○ 국방부고시제2015-93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.....	29
○ 국방부고시제2015-94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.....	29
○ 국방부고시제2015-95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.....	30
○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-43호(전원개발사업<신고리원자력 3,4호기> 실시계획 변경).....	30
○ 여성가족부고시제2015-10호(청소년유해매체물).....	38
○ 국토교통부고시제2015-159호(삼성~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).....	47
○ 기상청고시제2015-2호(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일부개정).....	48
○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-11호(국적취득).....	48
○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-3호(2015년도 영산강·섬진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) .....	49
○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-41호(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) .....	61
○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-101호(하천점용 허가).....	92
○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-102호(하천점용 허가).....	93
○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-103호(하천점용 허가).....	93
○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-104호(하천점용 허가).....	94
○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-105호(하천점용 허가).....	94

(이면 계속)

## 4. 사업의 내용

- 노선 : 삼성~수서~성남~용인~동탄(연장 39.5km)
  - 전용구간 : 삼성~수서고속철도 접속부(연장 9.8km)
  - 공용구간 : 고속철도 접속부~동탄역(반복선 포함)(연장 29.7km)
- 노반, 건축, 궤도, 기계, 전기, 신호, 통신, 주박선(1개소) 및 기타 부대시설공사

## 5. 사업비 : 1조 5,547억 원

## 6. 사업기간 : 2014~2021년

## 7. 사업노선의 기점과 종점

- 기점(삼성) :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
- 종점(동탄) : 경기도 화성시 동탄4동 일원

## 8. 주요 경유지, 정거장 및 철도차량기지의 위치

주요경유지, 정거장 및 철도차량기지	행정구역	비고
삼성정거장	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	지하역사(전용역사)
수서정거장	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일원	지하역사(전용역사)
성남정거장 (성남~여주 환승시설 포함)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, 이매동 일원	지하역사(전용역사)
용인정거장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, 보정동 일원	지하역사(전용역사)
동탄정거장	경기도 화성시 동탄4동 일원	지하역사(공용역사)

\* 장래 A노선(일산~삼성) 차량기지 등 활용

**●기상청고시제2015-2호**

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일부개정

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3월 19일

기 상 청 장

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「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」, 「기상기술개발사업」, 「지진기술개발사업」, 「기후변화 감시·예측 및 국가정책지원 강화」, 「차세대 도시·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」 사업에 대한 기획·관리·평가·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관리 업무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●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-11호**

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,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.

2015년 3월 19일

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